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250
번호	

제출년월일 : 1994. 7.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사유

- .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용도폐지, 매각대금분할 납부 범위, 대부료의 요율, 연체이자율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 행정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수 있는 범위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 (안 조례 제11조)
-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할수있는 범위 확대 (안 조례 제22조)
- . 경작목적 사용토지 대부료 요율을 현 농지소득금액150/1,000 와 토지시가 표준액25/1,000중 저렴한 것으로 적용한것을 각각50/1,000, 8/1,000로 요율 인하 (안 조례 제23조)
- .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 금고업무지정 금융기관 일반 연체 이자율에서 연15%로 조정 (안 조례 제28조)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 항력의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6. 시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 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 사업'으로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 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7조 (시공유재산 심의회)		제 7조 (시공유재산 심의회)		
① 생 락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락		② (현행과 같음)		
1. 생 락		1. (현행과 같음)		
2. 주요재산의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		
3. 생 락		3. (현행과 같음)		
제11조 (관리 및 처분)		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 생 락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락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락		③ (현행과 같음)		
1. 생 락		1. (현행과 같음)		
2. shit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2. ----- 1, 000만원 -----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수있다.		① 삭 제		
		② 삭 제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 할때,		1.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2. 제 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	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 각할때,	2. 삭	제	
3. 생	략	3. (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 설)	6. 시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		
		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		
		는 경우		
	(신 설)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		
		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		
		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		
		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① -----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		-----		
의 1,000분의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		

현	행	개	정	안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		-----	취락개선사업	-----
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		-----		-----
여는 1,000분의25로 한다.		-----		-----
② 영제92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②	-----		-----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		-----		-----
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		-----
197조의 규정에 의한 <u>농지소득 금액</u>		-----	농지소득 금액	-----
의 1,000분의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	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	-----
<u>표준액의 1,000분의25중 저렴한 금액</u>		-----	<u>표준액의 1,000분의8중 저렴한금액</u>	-----
<u>으로 한다.</u>		-----	<u>으로 한다.</u>	-----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u>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에</u>		<u>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u>		
<u>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u>		<u>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u>		
<u>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의 금고 업무</u>		<u>의 연체 요율은 연15%로 한다.</u>		
<u>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 기관의</u>				
<u>일반 연체 이자율로 한다.</u>				
제39조의2		제39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 계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	-----	
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